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57

제출년월일 : 2021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당초 관내 시내버스 노선만 무상교통이 적용된 것을 환승할인, 지하철 무료까지 통합형 카드를 노인회 요청하여 이용자 편리성 및 혜택강화 필요

○ 경기도 권고에 따라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(G-PASS) 이용함에 따라 당초 운송사업자에게 손실금을 지원하려던 것을 어르신에게 교통비로 지원

☐ 주요내용

○ "교통카드" 발급 주체를 "안산시" 에서 "무상교통 사업제휴·협약 은행" 으로 변경 (안 제2조제4호)

* G-PASS카드는 경기도 – 농협 간 협약으로 농협에서만 발급 가능

○ "손실요금" 을 "교통비" 로 변경하고, 교통비 보전대상은 "운송사업자" 에서 "어르신" 으로 변경 (안 제2조제5호)

○ 시장이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변경(안 제6조제1항)

○ 교통비 청구대행 및 정산주체를 "운송사업자" 에서 "교통카드정산사업자" 로 변경 (안 제6조제2항)

○ "요금 청구서" 를 "교통비 내역서" 로 변경 (안 제6조제3항,4항)

○ "운송사업자" 를 "교통카드정산사업자" 로 변경(안 제8조제1항)

☐ 개정 조례안 : 붙임1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**예산수반사항　　: 붙임4**

□ **사전예고(결과)　: 의견없음**

○ 입법예고 : 2021. 7. 8. ~ 2021. 7. 23. (15일간)

□ **기타 참고사항**

○ 현행조례　: 붙임5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6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시" 를 "무상교통 사업 제휴·협약 은행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 "손실요금" 이란" 을 " "교통비" 란" 으로, "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" 을 "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" 으로 한다.
제5조제1항 중 "시장에게" 를 "무상교통 사업 제휴·협약 은행에" 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"(손실요금의 지원 등)" 을 "(교통비의 지원 등)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시장은" 을 "시장은 어르신에게" 로, "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지원 할" 을 "따른 교통비를 지원할"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버스 운송사업자" 를 "교통카드 정산사업자" 로, "손실요금" 을 "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" 로, "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" 를 "교통비 내역서 등으로"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청구서를" 을 "내역서 등을" 로, "청구서나 그 내역을" 을 "그 내역을"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손실요금 청구" 를 "교통비 내역 확인"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운송사업자" 를 "교통카드 정산사업자" 로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손실요금을" 을 "교통비를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대중교통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대중교통과장 임 종 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버스팀장 구 본 석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신 길 주 (행정 2955)

〈 붙임 2 〉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교통카드” 란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. 5. “손실요금” 이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- 무상교통 사업 제휴 · 협약 은행 ----------. 5. “교통비” 란 ----------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---------.
제5조(지원방법) ①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③ (생 략)	제5조(지원방법) ① ---------- 무상교통 사업 제휴 · 협약은행에 ----------.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
제6조(손실요금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무상교통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 ② 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6조(교통비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----------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------. 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-------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----------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----------. ③ ----- 내역서 등을 ---------- 그 내역을 ----------.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---------- .

제8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 등에게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	제8조(사후관리) ① ---------- -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, 지원금 또는 손실요금을 수령한 경우	2. ---------- ----------교통비를---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